

# D'LIGHT



법무법인 디라이트

2019년

블록체인/암호화폐 산업의  
규제 동향과 전망

# 한국의 규제 및 입법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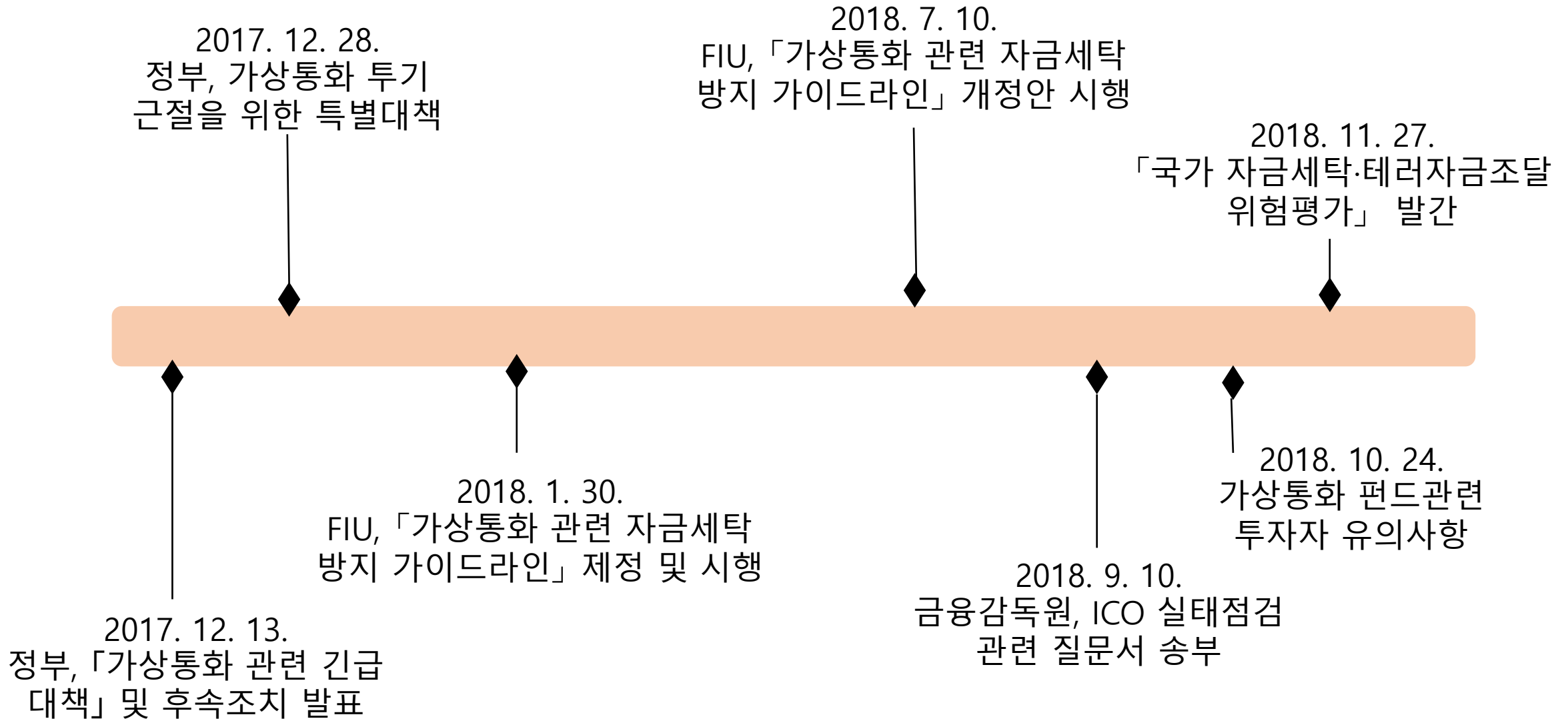
변호사 박경희

02 2051 1871  
010 4875 4856  
khp@dlightlaw.com

## 한국의 규제 및 입법 동향

- I. 국내 가상통화 규제 경과
- II. 대표적인 국내 가상통화 규제 관련 조치
- III. 가상통화 관련 입법 시도
- IV. 가상통화 관련 최근 법원 판결
- V.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 고시
- VI. 블록체인에 관한 정부·지자체 지원
- VII. 향후 입법 및 규제 동향

## I. 국내 가상통화 규제 경과



## II. 대표적인 국내 가상통화 규제 관련 조치

### 1. 「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」 - 2018. 1. 30. (금융정보분석원)

- 금융회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여 ICO 및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간접적으로 규제
-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해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(Enhanced Due Diligence; EDD) 이행
- 취급업소 현황에 대한 공유체계 구축
- 취급업소의 주요 의심거래유형 열거 및 보고의무
  - ex. 현금을 수반하는 금융거래, 분산 금융거래, 금융거래 액수(1일 1,000만원, 7일 2,000만원), 금융거래빈도(1일 5회, 7일 7회) 등
- 거래거절, 중단 사유 열거 (정보제공 거부, 정보 신뢰성 無, 실명확인입출금계정서비스 미이용)
- FIU의 타 기관(국세, 관세청, 검찰 등)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제공

## II. 대표적인 국내 가상통화 규제 관련 조치

### 1. 「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」 개정안 – 2018. 7. 10.

-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비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이상거래 발견 시 강화된 고객확인 실시
- 해외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목록도 금융회사 간에 공유
- 거래 거절, 거래 중단 사유발생시 "지체없이" 거절/중단 시행, 폐업 등 현지실사 불능을 거절 사유로 추가(기존 사유: 정보제공 거부, 정보 신뢰성 無, 실명확인입출금계정서비스 미이용)

## II. 대표적인 국내 가상통화 규제 관련 조치

### 2. 금감원, ICO 실태점검 관련 질문서 송부

- 2018. 9. 10. 국내 20여개 업체에 52개 질문으로 구성된 'ICO 실태점검 관련 질문서' 를 일제히 송부, 2018. 9. 21.까지 제출 요구
- 주요 질의사항
  - 국내 기술보유 회사, 발행지 발행회사의 개황 및 양사 간 계약관계에 관한 디테일한 질의, 특히 회사의 주요주주 및 임원에 주목
  - 프로젝트 및 ICO 주요내용 및 진행경과, 규모 등
  - 한국 투자자에 대한 홍보,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권리
- 전반적인 규모, ICO 구조의 건전성,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등을 위주로 확인
- 결과발표가 12월 중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, 현재까지 미발표

## II. 대표적인 국내 가상통화 규제 관련 조치

### 3. 「국가 자금세탁·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」 - 2018. 11. 27. 관계부처 합동

- 가상통화의 AML/CFT 취약점 4가지: ①거래의 익명성, ②유사수신 행위에 악용가능성, ③기타 사기수단으로 악용가능성 및 ④가상통화 취급업소의 AML/CFT 미이행을 꼽음
- (i) 금융기관과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에 대한 규제(취급 가이드라인 발행, 입출금계정 실명확인), (ii)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AML/CFT 의무부과 방향으로 대응 추진(법률개정 추진 중 - 2018. 3. 제윤경 의원 발의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법률안(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상호 등 신고의무, 금융기관과 동일한 자금세탁방지의무, 정보보호 보존의무, 예치금 분리보관 등)



## II. 대표적인 국내 가상통화 규제 관련 조치

### 4. 가상통화에 관한 과세

- 가상통화 과세 T/F 구성하여 주요국 사례 등 참고하여 심도있게 검토(2017. 12. 13.)
- 2018년 세법 개정안에 가상통화 과세안 미반영(2018. 7. 30.)  
→ 가상통화 취급업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서만 제외
- 기타 가상통화 관련 부가세,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언론 보도에 대해 부정 보도자료

### III. 가상통화 관련 입법 시도

- 대표적인 관련 국회 입법안

- 2017. 7. 박용진 의원 발의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일부개정법률안
- 2018. 2. 정병국 의원 발의 「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정안
- 2018. 2. 정태옥 의원 발의 「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」 제정안
- 2018. 9. 하태경 의원 발의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일부개정법률안

- 대체적으로 가상통화를 정부 관리 하에 두려는 의도

-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

## IV. 가상통화 관련 최근 법원 판결

- 대법원은 「범죄수익은닉처벌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몰수의 대상을 '재산'으로 확장하여 사회통념상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이익일반을 의미한다는 것을 전제로 비트코인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였고, 몰수의 대상으로 보았음(2018도3619)
- 부산지법은 미반환 비트코인 인도를 명하면서, 강제집행 불능 시 변론종결 당시의 국내 비트코인 시가로 환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(2017가단11429)
- 서울중앙지법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미이용을 이유로 한 농협의 입금정지조치에 대하여 입금정지조치금지가처분 인용(2018카합21246)
- 서울중앙지법은 가상화폐 차익 남길 목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매수대금을 외국에 송금한 C사 대표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벌금 선고(2018고정1934)
- 서울남부지법은 가상화폐와 원화 포인트를 허위로 충전하여 거래량을 부풀린 D 거래소 대표에게 사전자기록 등 위작, 사기 등 혐의로 실형 선고

## V.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 고시

분류코드	분류 명칭
58211-1	블록체인 기반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<u>공급업</u>
58212-1	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<u>공급업</u>
58221-1	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<u>공급업</u>
58222-1	블록체인 기반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<u>공급업</u>
62010-1	블록체인 기반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
62021-1	블록체인 기반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
62090-1	블록체인 기술 관련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서비스업
63112-1	블록체인 기술 관련 호스팅 서비스업
63999-1	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
63999-2	블록체인 기술 관련 기타 정보서비스업

- 2018. 7. 27. 통계청 고시 제2018-269호로 **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 고시**
- 블록체인기술 산업활동 관련 국가통계 생산, 서비스 및 관련 정책 지원 등 행정목적에 활용 위함
- 2018. 9. 27.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아래 10개 업종 중 **'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'**은 벤처기업에서 제외

## VI. 블록체인에 관한 지원 – 정부 차원

- 2018. 3. 국가기관 및 지자체 대상으로 시범사업 과제의 사전수요조사 진행, 41개 기관이 제출한 72개 과제 중 6개를 엄선하여 총 42억원의 예산 투입
  - 관세청, '전자상거래물품 개인통관 시범 서비스' – 2019. 1.부터 민간업체와 시범사업 시작 예정
  - 농림축산식품부, '블록체인 기반 축산물 이력 관리 시스템 시범사업' – 2019. 1.부터 전북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 예정
  - 국토교통부, '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시범사업' – 2019. 1.부터 제주도 내 11개 금융기관에서 시범 운영, 추후 '부동산 거래 통합 서비스'로 확대 개편 예정
  - 중앙선관위, '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 시스템'
  - 외교부, '블록체인 기반 재외공관 공증 발급체계 구축사업' – 2019. 1분기 주일본대사관, 주LA총영사관 및 국내 14개 금융기관에 우선적으로 시범 적용 예정. 2020년까지 모든 재외공관에 적용할 것이라고 밝힘
  - 해양수산부, '블록체인 기반 컨테이너 반출입증 통합발급 서비스' – 2018. 12.부터 1년간 부산 신항에서 현대상선, 롯데글로벌로지스, 부산신항국제터미널 등 5개 물류업체 대상으로 운영될 계획
- 2019년에는 시범 사업 12개로 확대, 민간주도 블록체인 국민 프로젝트도 3~4개 신설 예정

## VI. 블록체인에 관한 지원 – 지자체 차원

### < 2018 대한민국 지자체 블록체인 사업 현황 >



출처 : <https://www.bloter.net/archives/326927>

## VII. 향후 입법 및 규제 동향

- **블록체인 기본 3법안, 2019년 1월 중 발의 예정**
  -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이상민 의원, 1월 발의 · 2월 국회 상정 목표
  - ① 연구개발 특구단지 지정을 통한 블록체인 전문인력 양성
  - ② 초혁신산업 특구단지 지정 및 M&A 활성화 위한 STO(증권형 토큰) 샌드박스 적용
  - ③ 가상통화 폐해 극복 대응법 및 관련 팀 구성

## VII. 향후 입법 및 규제 동향

-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(FATF) 관련

- 2018. 10.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가상통화 관련 FATF 국제기준 개정

- ✓ 가상통화 용어를 'Virtual Asset'으로 결정하고, 가상통화 서비스 제공자(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)에 대해 AML/CFT 의무 부과
    - ✓ '가상통화 서비스 제공자'에는 가상통화 거래소뿐만 아니라 ICO 관련 금융서비스 제공자도 포함
    - ✓ FATF는 2019. 6.까지 주석서와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'가상통화 서비스 제공자'의 상세 범위, 부과대상자의 의무사항 등 구체적 사항 규정 예정

→ 국제기준 개정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것이며, 가상통화 및 ICO 관련 사업을 합법화 해야 하는 것은 아님

- 일반적으로 FATF 권고안을 국내법상 반영할 의무 有, 2019년 상호평가 실시



[www.dlightlaw.com](http://www.dlightlaw.com)

법무법인 디라이트  
변호사 박경희

02 2051 1871  
010 4875 4856  
[khp@dlightlaw.com](mailto:khp@dlightlaw.com)